

#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### 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SK건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및 사후점검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II. 명칭 및 적용범위

- 내부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상생협력심의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로 한다.
- 회사가 협력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회사 내 별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III. 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#### 1. 위원회 구성

- 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그 지원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동반성장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-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지원하며, 위원회 자료의 준비, 의견의 취합, 현황의 파악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.

#### 2. 위원회 운용

- 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각 위원은 회사 내 담당조직의 팀장 또는 팀원에게 권한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- 시급한 사안이면서 단 기일 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전자서명, 이메일, 팩스 등을 통해 각 위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.
-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
### 3. 위원회 역할

- (1) 위원회는 직전년도 공정거래협약 업체의 전체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 금액이 1% 이상인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(3) 직전년도 공정거래협약 업체의 전체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 금액이 1% 이상인 하도급거래 계약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  - ①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
  - ②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 전가 여부
  - ③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
- (4) 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5) 기타 상기 계약금액 미만의 경우임에도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6)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7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4. 위원회 의사록 및 보관

- (1)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회의 진행의 내용,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다.
- (2)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의 의사록 및 관련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